

『대부제도』 변경 시행 안내

대부제도의 수혜 형평성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,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1. 주택대부 점수기준 전면 개편 후 고득점 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- 결혼 · 생애최초 가점 전환, 연령별 이원화 폐지, 근속기간 점수 강화 등
- 국민주택규모 · 실거래가 기준 가점 신설, 다자녀 가점 확대 등 정부정책 반영

2. 주택대부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.

-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만 신청가능(개인간 직거래 신청불가)
- 연대보증 채권 확보 시 대부신청인의 신용점수 제출(KCB기준 900점이상)

3. 긴급생활자금 신청사유와 증빙서류 기준을 확대합니다.

- 신청사유 추가 : 희귀난치성질환 → 희귀/중증난치질환
- 금전사고피해 증빙서류 확대 : 부동산 관련 민사 진행 시 법원소장 등 인정

더 자세한 내용은 ERP 제도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경로] ERP-HR > 개인업무 > 복리후생 > 제도안내 > 대부/금융기관이자지원

문의 복지업무지원센터 welfare01@kt.com | 1577-0104 (내선번호 1)

주택자금 선정기준표

구분	내용							
신청 사유	결혼		생애최초			일반		
	30		20			0		
※ 결혼, 생애최초 조건 중복 만족 시 점수 합산처리								
근속 기간	1년 이하	3년 이하	5년 이하	7년 이하	10년 이하	15년 이하	20년 이하	20년 초과
	0	3	5	7	10	20	25	30
주택소유 여부	有주택				無주택			
	0				15			
주택 규모	미해당				해당			
	0				5			
※ 국민주택 규모이하(정부기준) & 고가주택 12억원 이하(실거래가 기준)								
대부 수혜이력	미수혜		3천만원 이하			5천만원 이하		
	30		26			21		
	7천만원 이하		1억원 미만			1억원 이상		
	15		8			0		
※ 대부종류 전체, 상환금액 무관								
직급	G3/G4/G5/책임				G1/G2/전임/선임			
	4				8			
※ 상무보 : 2점, 그 외 직급 : 4점								
가점 부여	장애 (직원)	표창 *최근 5년이내 (2개 이상인 경우 높은 점수 인정)				다자녀		
		본부장	부문장	CEO	KT인賞	2인	3인이상	
	1	2	3	5	7	3	7	